



# 농림축산식품부



수신 수신자 참조  
(경유)

제목 「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알림

1. 가축의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을 개선한 「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('23.3.23 ~ 5.2, 40일간) 하오니,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 서식으로 **2023.5.2(화)까지 제출**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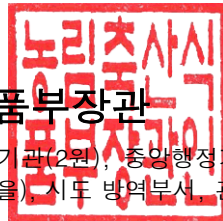
(부서명, 담당자, 연락처)

개정안	수정안	수정사유

2. 아울러 동 기한 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

- 붙임 1. 재입법예고문 1부.  
 2.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. 끝.  
 3. 조문별 개정이유서 1부. 끝.

## 농림축산식품부장관



수신자 중앙행정기관(18부), 중앙행정기관(18청), 중앙행정기관(2원), 중앙행정기관(5처), 중앙행정기관(7위원회), 농림축산식품부전체과, 산하기관(농병), 소속기관(농을), 시도 방역부서, 관련협회

주무관 **박해성** 사무관 **박경일** 방역정책과장 **이동식** 전결 2023.3.22.

협조자

시행 방역정책과-2115 (2023. 3. 22.) 접수

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,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/ <http://www.mafra.go.kr>

전화번호 044-201-2520 팩스번호 044-868-0628 / [phsk@korea.kr](mailto:phsk@korea.kr) / 대국민 공개